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51
------------	-----

2018년 11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8일, 김태호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8년 11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
-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속

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11.1.~11.8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원안동의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sup>1)</sup> 등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현재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특별회계의 실제 사용 현실에 맞게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그 동안 동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운영 예산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집행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관련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던 사항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현행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도시철도 건설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운영사업에 예산지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답변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을 운용하는 회계로서 회계의 목적과 설치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지속적인 도시철도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추승우, 채유미, 경만선,  
이승미, 송아량, 오중석, 문장길,  
김재형, 박상구, 이호대 의원(11명)

## 1. 제안 이유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규정하도록 함  
(안 제1조)

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시철도법
-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u>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u>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